

제외국의 식품 위해분석 조직체계 현황 및 시사점

Risk Analysis System in Foods in Selected Countries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가속화, biotechnology와 nanotechnology와 같은 식품산업의 신기술 및 유전자재조합 식품, 방사선조사식품과 같은 신식품의 출현 등 최근 식품안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위해평가(risk assessment), 위해관리(risk management), 위해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의 3요소로 구성된 제외국의 위해분석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제외국의 위해분석 체계 및 현황

1963년 국제연합(UN)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과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합동식품규격작업에 의해 설립되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무역의 공정한 상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화된 국제적인 식품표준인 Codex Alimentarius(Codex)를 개발하였다. 이는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의하여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논쟁 해결을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그 중요도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2008년 회원국수는 177개국이며 국제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와 정부 간 기구가 Codex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1년에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다.

<표 1>에서 Codex는 위해 관리와 위해성 평가의 기능적 분리를 권고하고 있다. 여건 상 같이 수행될 경우에는 중요한 위치에서 위해성 평가와 위해 관리를 분리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표 1. 위해성 평가 및 위해 관리 관련 Codex 권고사항

년 도	출처	기술내용	
		원문	번역문
1 0 0 0	Expert consultation report	An important principle is the functional separation of risk assessment from risk management.	중요한 원칙은 위해성 평가는 위해관리로 부터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2 0 0 6	각국의 식품당국을 위한 제안서	3.4.2 Functional separation of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the functions of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should be carried out separately to the extent practicable Functional separation may be more obvious when different bodies or officials are responsible for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tasks. However, Functional separation can also be achieved in countries with limited resources and personnel where risk assessments are undertaken by people who act as both risk assessors and risk managers. what is important in these cases is to have conditions in place which ensure that risk assessment tasks are carried out separately from risk management tasks.	3.4.2 위해성 평가와 위해관리의 기능적 분리 위해성 평가와 위해관리의 기능은 실용 가능한 정도에서 분리 수행되어야 한다. 기능적 분리는 다른 기구나 회사가 위해성 평가와 위해관리를 할 때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그러나 기능적 분리는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위해성 평가와 관리가 모두 수행되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점은 중요한 위치에 위해성 평가를 위해관리와 분리 수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2 0 0 7	official standard	11. functional separation 16. Determination of risk assessment policy should be included as a specific component of risk management. 17. Risk assessment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by risk managers 18. The mandate given by risk manager 19. risk managers should ask risk assessors to evaluate the potential changes in risk	16. 위해성 평가 정책의 결정은 위해 관리의 특정구성요소로 포함되어져야 한다. 17. 위해성 평가 정책은 위해관리자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18. 위해관리자에 의한 위임 19. 위해관리자는 위해성 평가자에게 위해의 잠재적인 변화를 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0 0 8	위해분석(Risk Analysis) 일반사항(General Aspects)		9. 위해평가와 위해관리는 기능상 분리되는 작업이 되도록 하여 위해 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위해평가자와 위해관리자간 역할 혼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해갈등(conflict of interest)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해분석이란 반복적인 과정으로서 실제 적용시점에서 위해관리자와 위해성 평가자간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Statement or principle concerning the role of science in the codex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extent to which other factors are taken into account		기타요소의 고려사항이 위해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근거 확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즉 이 과정에서 위해평가가 과학적인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성 평가와 위해관리과정은 분리되어야 한다.
	Statement of principle relating to the role of food safety risk assessment		3. 위해평가와 위해관리는 실제적인 면에서 상호작용이 필요하지만 위해평가와 위해관리 기능은 분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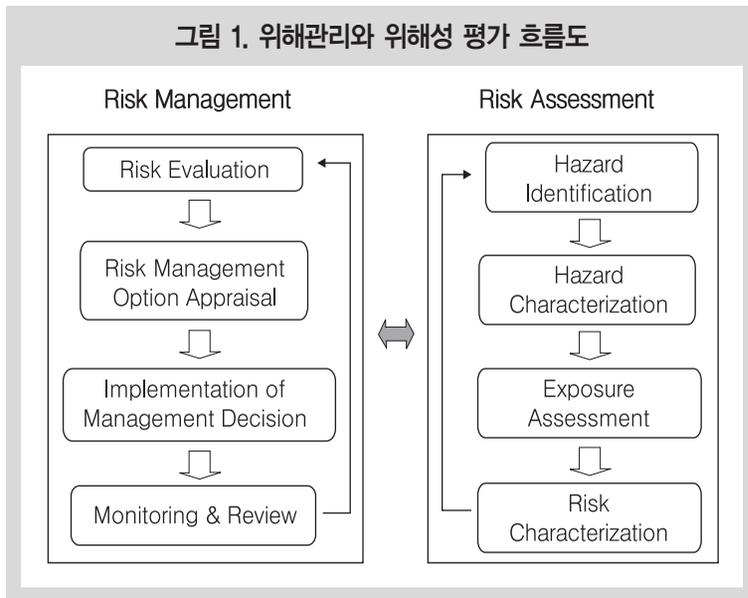
위해성 평가와 위해관리의 각각 기능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고 상호 협조체계를 이루게 된다.

관리 조직체계의 유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였고, <표 2>에는 국내의 위해성 평가 및 위해관리 조직체계를 통합형, 기능별 분리형 분리형으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국가와 소관기관이 정리되어 있다.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국가별 다원화, 일원화로 구분되듯이 위해분석 관련 기관들도 체계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각 국가별 식품안전 환경과 여건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오고 있다.

4개국과 유럽연합의 조직체계와 운영체계를 비교한 결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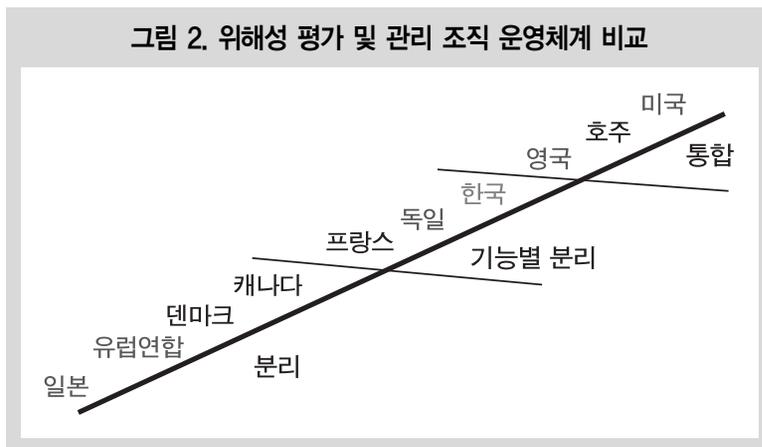


1) 조직체계

본과 같이 최근에 위해성 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국가에서는 특히 관계기관 간 및 대국민 대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2]에는 제외국의 위해성 평가 및 위해

대국민 대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일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위해성 평가기관을 영국은 Food Standards Agency(FSA) 부처소속으로 독일은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서로 다른 조직체계

표 2. 국내외 위해성 평가 및 위해관리 조직체계 비교

위해성 평가	국가명	체계구분	위해관리
보건부 소속: - 식품의약품청(FDA)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 수의약품센터(CVM) 농무부 소속: - 식품안전검사청(FSIS) - 동식물검역청(APHIS) 환경보호처(EPA)	미국	통합	보건부 소속: - 식품의약품청(FDA) CFSAN 농무부 소속: - 식품안전검사청(FSIS), 농업유통국(AMS) - 곡물검사·유통관리국(GIPSA) - 동식물검역청(APHIS) 상무부 소속: 국립해양대기청(NOAA)
식품기준청 내 독립부서	영국		식품기준청(동물의약품, 농약 포함) 환경식품농촌부 보건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 (보건고령화부 소속) 내 독립부서	호주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 관계장관회의(식품법규장관회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한국		보건복지부, 식약청(본부) 농림수산식품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표시)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검역)
연방위해평가연구소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소속)	독일	기능별 분리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소속)
식품안전위생청 (농수산부, 고용연대부-보건부, 경제재정산업부 공동 감독)	프랑스		농수산부 식품총국 농수산부 식품국 국제경제정책국(정책기획) 농식품부 지방사무국 지역수익국(현장차원) 공중보건부 보건국 경제재정산업부 소비자 공정거래, 소비 및 부정행위방지국(경제적 지원)
보건부	캐나다		캐나다 식품감시청 (농업·농식품부 소속, 보건부 감독)
덴마크국립식품연구소 덴마크국립수의연구소 (과학기술부 소속의 덴마크기술대학 소속)	덴마크	분리	수의식품청(식품농수산부 소속)
유럽식품안전청	유럽연합		EU집행위원회 보건소비자보호총국 유럽연합 및 회원국 이사회, 농업위원회 보건총국
식품안전위원회(내각부 소속)	일본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소비자청, 내각부(본부)

주: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CFSAN),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FS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APHI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AMS), 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GIPS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

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해성 평가 기관은 독립성을 강화시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영국과 독일은 위해성 평가기관과 위해관리 기관의 조직체계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Codex의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운영형태를 통해 필요한 곳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위해관리와 협력을 원활히 하는 추세로 발전해오고 있다. 특히 독일은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각 위해물질 또는 제제별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경향으로 이들이 유럽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해관리의 의사결정에는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는 위해성 평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단계로 위원회의 활동을 접목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다원화된 미국의 경우는 각 부처에서 위해성평가와 위해관리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고 향후 변화의 추세가 관찰되고 있지 않다.

즉 위해분석체계는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연관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변화보다는 우선은 운영체계의 개선으로 위해성 평가방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

(1) 통합형 미국 및 영국

미국은 식품품목별 다원화되어 담당부처별

로 위해성 평가와 위해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식품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위해관리 즉, 기준설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현재 부처 간 또는 연방과 주정부의 정보공유는 연방정부에서 교부금의 형태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원활히 수행되는 단점이 있다.

영국은 위해관리기관에 독립부서를 설치하여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위해성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출량 평가 등 최종 위해 결정 시에는 FSA가 참여하고 있다.

(2) 기능별 분리형 독일

기능별 조직 분리 중 독일은 위해성 평가기관이 위해관리기관에 소속된 연방부처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점을 보완하였다.

(3) 분리형 일본 및 유럽연합

유럽연합에는 위해성 평가와 위해관리 기관이 독립되어 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위해관리는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위해성 평가의 중심인 과학위원회의 운영과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연계가 원활하다.

일본은 식품안전관리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목적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위해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부에 ‘식품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소비자청 및 소비자 위원회설치법」 시행에 따라 내각부에 '소비자청'을 신설하였다. 각 부처에서 위해성 평가, 위해관리, 위해정보교류를 하던 우리나라와 유사하던 체계를 위해성 평가는 '식품안전위원회', 위해관리는 각 해당부처로 개편하고, 위해정보 교류는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통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위해성 평가를 식품안전위원회라는 독립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절차적 효율성 감소 및 행정비용의 증가 등의 단점은 있으나,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식품안전에 대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들의 인식과는 달리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조사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감소되기 보다는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소비자청의 역할은 대국민 위해정보의 교환을 중심으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및 미생물의 위해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사업으로 위해관리검토회를 구성하고 오염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 식품위해관리 부처를 통합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최근 후생성에 설치할 것인지, 농림수산성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지연되고 있다.

2) 운영체계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일본은 분리형의 조직체계에서 특히 각 부처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실시되어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03년 내각부 소속으로 소비자청이라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통일화를 꾀하고 소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일본은 특히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조직체계를 광범위하게 개편하였기 때문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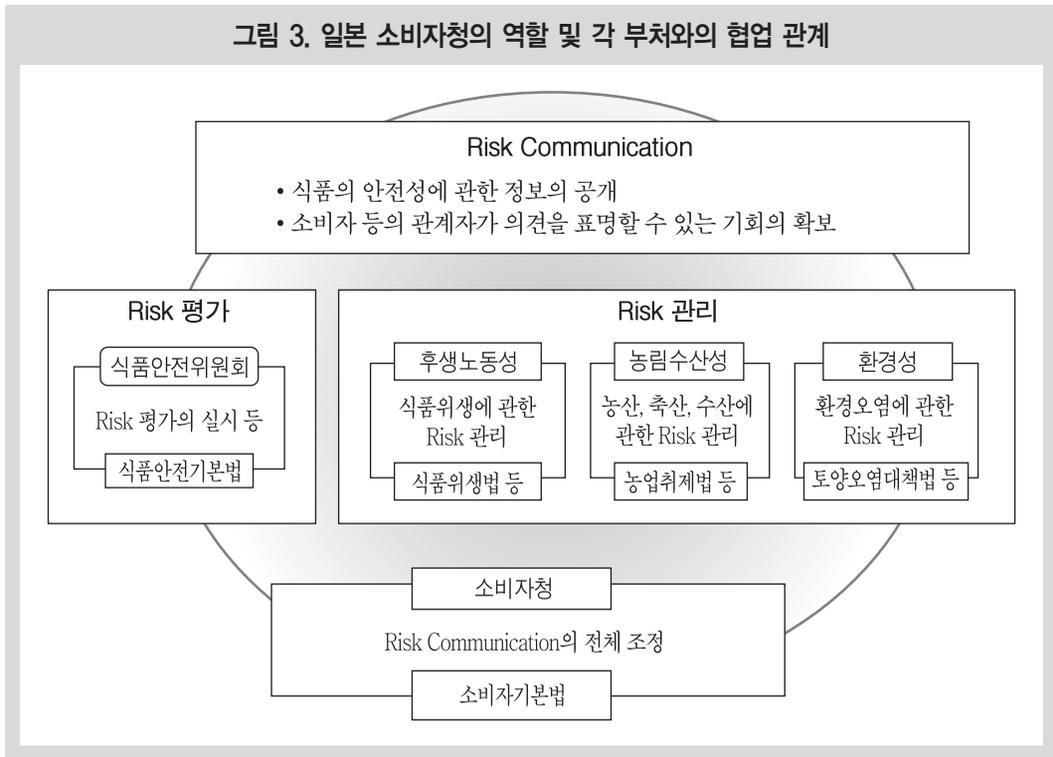
[그림 3]에는 일본 소비자청의 역할과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등과 관계 부처간의 협업관계가 기술화되어 있다. 소비자청은 식품안전정책의 종합·조정, 식품위생법, JAS(농산물표시·규격)법, 건강증진법(기능성표시)에 규정한 표시 업무를 직접 관장(기존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의 업무), 소비자 정보를 일원적으로 수집하고, 각 부처에 권고하거나 조치요구, 또는 빈틈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국가들은 모두 위해성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더욱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2) 협력체계 구축

유럽연합은 유럽연합내의 관계기관과의

그림 3. 일본 소비자청의 역할 및 각 부처와의 협업 관계



MOU체결로 상호정보공유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위해성 평가 대상별, 제제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과학적인 근거로 객관성 있는 위해성 평가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표 3>에는 국가별 위해성 평가위원회가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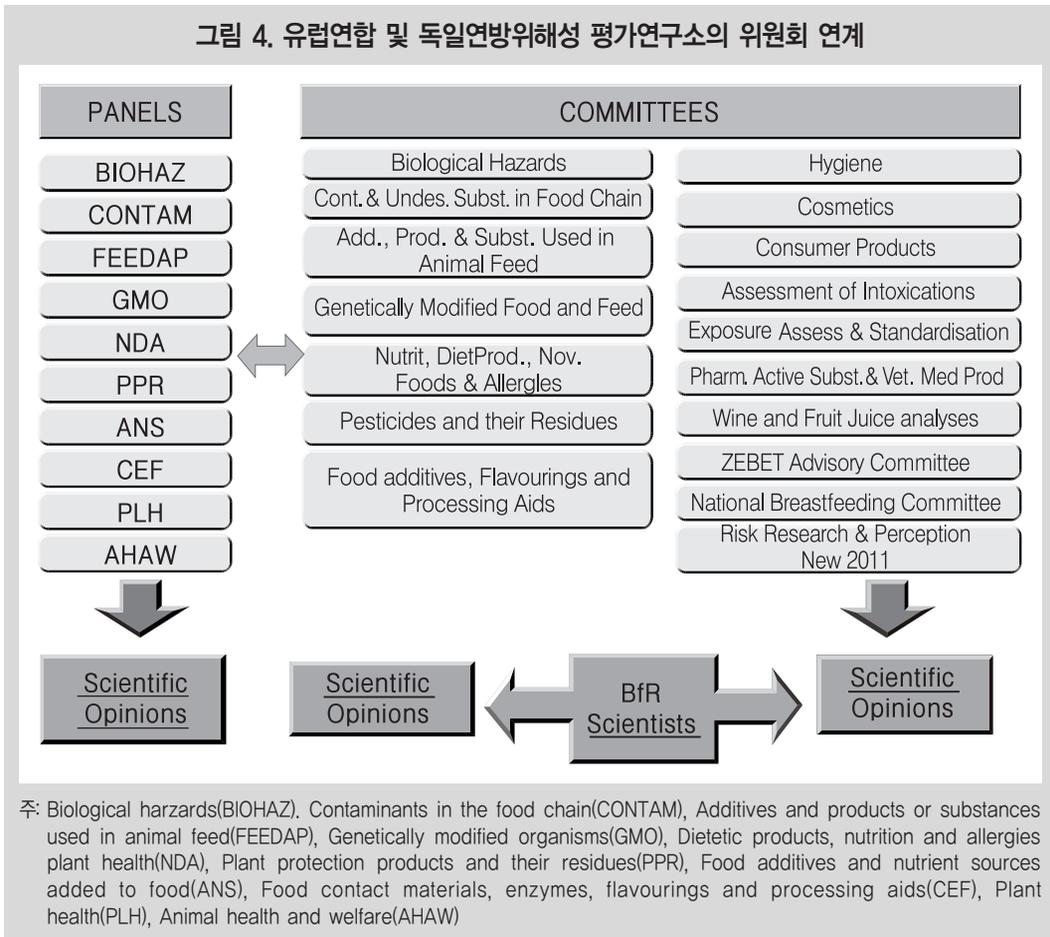
[그림 4]에는 유럽연합과 독일연방위해성 평가연구소의 위원회간의 연계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 유럽연합의 위원회의 틀에 맞춰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할 추세이다.

또한 전문성이나 인력 문제 등으로 정부기관 자체적으로 수행이 어렵거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연의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예

표 3. 국가별 위해성 평가 위원회 비교

국가명	위해성 평가 위원회
한국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EU, 영국, 독일	유럽식품안전청 / 과학패널, 영국 FSA의 위원회, 독일 BfR의 위원회
미국	발암평가위원회 · 정량적위해성 평가위원회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그림 4. 유럽연합 및 독일연방위해성 평가연구소의 위원회 연계



를 들어 독일의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가기관 또는 학계 연구소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독일의 위해성 평가기관과 위해 관리기관 등 식품안전 관련 기관들은 [그림 5]와 같이 자문, 협업, 자료공유 등을 수행하며 협업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Codex에서는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유전자 재조합식품(GMOs)의 위해평가, 위해관리 및 정

책시행 관련 기관들이 <표 4>와 같이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첨가물의 경우 위해성 평가는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JECFA)에서 수행하고 Codex Committee on Food Additives(CCCA)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에서 위해관리로서 표준을 설정하며 각 정부는 이를 시행하게 된다.

그림 5. 식품안전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일정부의 협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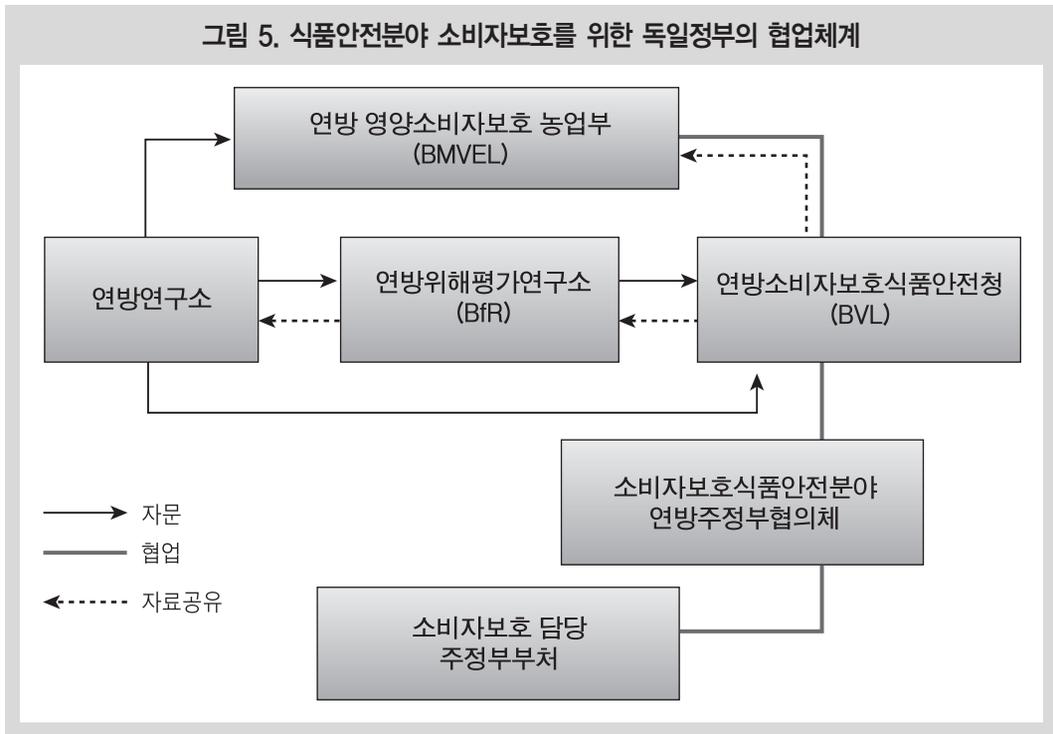


표 4. 제제별 위해분석 관련 책임분담

구분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GMOs
Risk Assessment (원칙, 절차 규정)	JECFA	JMPR ¹⁾	정부
Risk management (표준설정)	CCFA & CAC	JMPR, CCPR ²⁾ & CAC	FDBT TF & CAC (정부)
시행	정부	정부	정부

주: 1) Joint FAO/WHO Meetings on Pesticide Residues
 2) Codes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자료 : 2008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3)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미국의 경우는 Joint Institute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JIFSAN)에 위해분석 관련 다양한 방법과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어 각 관련기관별 전문가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5>와 같이 JIFSAN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달 방법도 온라인으로 전 세계의 4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강의와 과제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참가자는 토론게시판에 참여

하고 과제물을 제출한다. 1일 과정, 7주 과정 등이 제공되고 있고 위해성 평가, 위해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 여름특강, 1일 코스 등 다양한 개최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 영국, 독일에서는 국가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보다는 협회나 단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편이다.

(4) 위해성 평가자료 관리체계 구축

유럽연합, 독일, 영국에서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 국가모니터링 자료,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모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식품안전위원회의 포털에서

평가서 뿐 아니라 매회 개최되었던 전문위원회의 보고서까지 검색이 가능할 정도로 정보공개를 통한 자료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표 6>과 같이 식품안전위원회는 평성 15년(2003년) 7월에 설립된 후 평성 22년(2010년) 7월말까지는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및 환경성 등으로부터 1,354건의 평가요청을 받아 928건의 평가(자체 평가 10건을 포함)를 종료하여 그 결과를 각 성에 통지하였다. 이때에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총리에게 권고·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총리를 통해 해당 성의 대신들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식품안전위원회(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 개최) 및 전문조사회 등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모든 회의록을 [그림 6]과 같이 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

표 5. 미국 JIFSAN의 개요

배경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성이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위해요소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안전의 위험분석 및 기술에 대한 전문가 육성과 교육의 기회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 위험 분석 및 도구와 기술의 원리에 대한 식품 안전 및 기타 공중 보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제공 • 전문가의 강의, 온라인 및 맞춤형 교육 과정에서 제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 있고 일반적인 식품 안전 위험 분석 및 위험 분석의 용어를 이해 - 식품 안전 및 기타 건강 결정이 위해분석을 통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이해 -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식품안전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기계, 도구를 이해 - Risk management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지식 이해 - 위해요소에 대한 논점을 동료,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해 •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교육 과정 - 강의: 여름 통합 프로그램(SIP) - 1일 코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소개

표 6. 일본의 식품건강영향평가의 심의현황

구분	요청건수	완료
식품첨가물	107	92
농약	545	317
- Positive List관계	218	115
동물용 의약품	287	257
- Positive List관계	65	46
화학물질·오염물질	59	37
미생물·Virus	5	5
프리온	12+1(15국가)	11+8국가
유전자변형식품 등	118	94
신개발식품	70	62
기타		
- 기구·용기포장		
- 곰팡이 독·자연독 등	150	45
- 비료·사료 등		
- 신개발·첨가물 합동		
합계	1,354	928

자료: 일본식품안전위원회(2010.7)

명성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식품의 섭취를 통하여 중대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정부가 일체가 되어 위해의 확대 및 재발의 방지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함과 동시에 위해물질 등에 관한 과학적 식견 및 식품안전위원회로서의 견해 등을 매스미디어, 정부홍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알기 쉽게 또한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3. 시사점

통합형, 기능별 분리형, 분리형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식

그림 6. 식품건강영향평가서 공개현황

食品安全委員会
Food Safety Commission

食品安全総合情報システム

トップ キーワード検索 食品安全情報情報 会議資料 Q & A 評価書 研究情報 調査情報 ヘルプ

評価書一覧 印刷ページ 全7件

評価書目分類	No.	評価品名	評価書請求受理日	評価結果通知日
添加物	1	と畜管理法の一部改正によると畜検査対象疾病の法規定に伴い、同法施行令第8条第1項中「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疾病の有無について」を削除すること	2003 (平成15) 年11月14日	2003 (平成15) 年11月21日
農薬	2	引渡物または原料料とする冷凍/生半種食品に係る食品健康影響評価について	2005 (平成17) 年8月23日	2006 (平成18) 年4月27日
動物用医薬品	3	疾病に罹患した家畜の肉等の廃棄基準の見直し	2003 (平成15) 年10月20日	2004 (平成16) 年1月15日
化学物質・汚染物質	4	調製粉乳のホシロウ薬	2003 (平成15) 年10月6日	2005 (平成17) 年5月19日
食品・容器包装	5	食自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品検査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よる食品検査の範囲の法規定に伴い、同法施行規則第9条第1項第1号中「別表第四に掲げる疾病及び具他の有無について」を削除すること	2004 (平成16) 年1月26日	2004 (平成16) 年1月29日
微生物・ウイルス	6	高病原性鳥インフルエンザの対策案として、だちょう及びひばり/ほうおんを追加すること	2008 (平成20) 年9月26日	2008 (平成20) 年10月2日
プレオシ	7	鶏肉中のカンピロバクター・ジモニノコ	-	2009 (平成21) 年6月25日

資料: <http://www.fsc.go.jp/fscis/evaluationDocument/list>

품안전 환경 및 여건, 위해분석체계, 위해성 평가 관련 운영체계를 고찰하고 비교·분석하여, <표 7>과 같이 각 국가별 특이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7. 국가별 위해분석 체계의 특이사항 및 시사점

구분	국가	특이사항 및 시사점
통합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중심기관이 없이 각 부처에서 분담하여 위해성 평가 및 위해관리 수행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상호보완적, 의존적 협조가 수행되기는 하나 정보 교류 미흡 - 민간, 기업의 접근 및 참여 가능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관리의 전체적인 전략은 식품기준청에서 담당하고 특정정책 및 집행업무는 환경식품농촌부에서 수행 -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경식품농촌부에서 관리하고 농장이후 단계의 위생관리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체계이나, 도축장은 식품기준청에서 관장 - 위해성 평가에는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활용하고, 독성평가, 노출량 평가는 FSA가 직접 참여하여 관리
기능별 분리형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산하에 위해성 평가기관과 위해관리 기관이 소속되어 있으나, 위해성 평가기관인 BfR은 'BfR 설치법'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감사원과 대법원에 준하는 독립성이 보장 -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추천 형식이 아닌 공모 형식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 위해성 평가와 위해관리 기관 형태도 부처별로 다름 - 동물의약품, 농약, 유전자재조합식품 등과 같은 경우는 연계되는 부처 및 기관 간의 정보 교류가 미흡
분리형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 평가는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수행하고 위해관리는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관련기관들과의 연계를 위한 MOU체결로 정보공유의 활성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위원회라는 과학적 견해, 객관성, 중립성을 제고하는 기관 설치 - 위해관리는 기존에는 후생성이 주무부처였으나,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정책조정을 수행하고, 기준 및 규격 설정업무는 후생성과 농림수산성이 실시하여 결과를 식품안전위원회에 보고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민간 주도적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 업무 효율성 보다 객관성 및 공개성에 무게를 둠 - 상주인력이 아닌 전문조사회 운영으로 비용 절감 - 위해정보교류 전담기관인 소비자청을 추가 설치 - 위해관리체계의 통합을 위한 식품안전처의 설치에 대한 검토는 부처 간의 유치 견해차이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